

國(外)事(件) — 2

라디오時間編成考案紛爭

— 構想者가 勝訴한 例 —

<1952年 12月 8日, 美聯邦地法判決>

1. 原告: 廣告業者(A)

2. 被告: 해밀튼 내셔널銀行
(B)

3. 事件概要

原告인 A는 廣告業者로서 聲樂이나 器樂에 才能이 있는 兒童을 탈렌트로 參加시키는 라디오時間表에 관한 아이디어를 構想하였다. 즉 同構想은 어느 企業으로부터 財政的인 支援을 받아 地方學校가 管理하되 여러學校에 出演시키려는 것이다.

A는 이 구상이 採用되면 適當한 報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被告인 B의 任員에게 아이디어를 提示하였다. 이에 接한 B는 檢討後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編成하기로 決定하였다.

A는 이 결정에 따라 週給 25弗로 準備作業을 하되 採擇되지 않을 경우에는 2週日前에 豫告하기로 合意하였다. 이 計劃案은 地方學校側의 承認을 얻기 위하여 提出하였고 契約後 3週日間 準備하는 동안에 B는 2週日前의 豫告없이 A와의 契約을 取消해버렸다.

그후 몇달이 지나서 地方教育學校로부터 B에 連絡하여 從來의 提案에 關心이 있는지의 與否를 問議하여 음으로써 原計劃은 다시 具體化되어 B는 다른 廣告業者에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同프로그램은 1年以上이나 週 1回씩 放送하였으며 여러學校가 出場하였다. 그 방송의 처음과 끝시간에는 스폰서인 B銀行의 提供을 받았으며 이에 A가 사용한 總經費는 4,700萬弗이나 되었는데 A인 原告는 그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補償金請求訴訟을 提起한 것이다.

4. 判決要旨

1) 法院은 아이디어에 財產權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現在로서는 疑問이 있다. 코먼 로우에는 存在하지 않으나 法은 더 柔軟性을 지녀야 한다.

2) 法은 트레이드 시크리트에서의 限定된 財產權을 認定하고 契約違反 또는 信賴義務違反에 의한 사용의 圖示에 대하여 停止命令의 救濟命令을 하게 된다.

더욱 나아가서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적어도 한정된 財產權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제 法은 아이디어가 特許權의 對象이 되지 않고 著作權의 目的이 되지않더라도 아이디어로서의 재산권의 効力을 인정한다.

이같은 概念은 法의 保護를 享受하기 위해 單純히 抽象的인 것을 넘어야 한다. 이는 具體的인 形態를 갖추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新奇한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아이디어의

利用에 대해서는 그것이 公開되지 않고 또 이같이 公有되지 않았을 경우 不法行爲의 理論에 따라 法律上 推定되는 계약 혹은 準契約理論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3) 원고의 아이디어가 오리지널리티의 問題는 法廷에서 決定될 問題는 아니며 陪審員에 의해 결정될 事實의 問題이다.

또한 배심원에 委任된 結果 原告의 純粹性이 있다는 청구를 拒否해야 할 本質的證據는 없었다. 같은 方法은 必然的으로 아이디어가 充分히 確定된 구체적인 形態를 取했는지의 여부에도 適用된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法廷은 배심원에 위임했다.

4) 끝으로 원고가 자기의 계획을 B代表者에게 提示한 이상 그는 보상의 값어치가 없는 이같은 開示는 아이디어를 公有시키는 繼續的인 公示이며 拋棄를 意味한다고 主張하는데 대해서는 만약 아이디어 所有者가 將來의 買受者에 대하여 後者에게 提供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충분한 開示를 不許한다면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같은 財產權은 價値가 없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은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認容됨으로써 B의 判決에 대한 異議申請도 否認되게 되었다.